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-3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6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창의롭고 활기찬 조직으로 “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”를 실현하고자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·조정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보상으로 구민복리 증진과 역동적 조직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별표 2중 1.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함

- (1) 6급 : 21% 이내 → 22% 이내(1% 증)
- (2) 8급 : 31% 이내 → 30.5% 이내(0.5% 감)
- (3) 9급 : 9% 이상 → 8.5% 이상(0.5% 감)

나. 별표 2중 2.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함

- (1) 7급 : 11% 이내 → 17% 이내(6% 증)
- (2) 8급 : 31% 이내 → 35% 이내(4% 증)
- (3) 10급 : 22% 이상 → 12% 이상(10% 감)

3. 개정근거

가. 지방자치법(2011.5.30 법률 제10739호) 제11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(2011.3.7 대통령령 제22699호) 제24조, 제25조, 제29조, 제30조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30,306천원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1. 6. 3. ~ 2011. 6. 7

나. 입법예고 의견 제출

(1) 제출자 : 김종수(교통지도과 직원)

(2) 제출 의견 : 별표2중 2 기능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반대

(3) 세부내용

① 지방공무원법 개정(10급 폐지 1년 유예)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와
실제 인원은 1명에 불과해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없으니, 10급
폐지 비율을 기능8급으로 충당 요구

② 기능 6급 비율이 타구 대비하여 낮으니, 상향 요구

③ 기능 6급 비율의 정원 조례와 규칙의 격차에 대해 규칙 개정 요구

다.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반영 여부

(1) 미반영 여부 : ① ~ ③ 미반영

(2) 미반영 사유

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2. 5.
24이후 반영

② 구별 인력구조 및 업무특성 등이 달라 단순히 비율만을 비교하여
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없으며, 우리구 인력구조와 직류별, 인원별
분포, 승진기간별 등을 감안하여 현행유지가 타당함

③ 규칙에서 정한 사항임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1. 6. 9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1.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2)% 이내	(31)% 이내	(30.5)% 이내	(8.5)% 이상

별표 2 중 2.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비 율	(3)% 이내	(17)% 이내	(35)% 이내	(33)% 이내	(12)% 이상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.

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							[별표2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일반직공무원							1. 일반직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4급이상</th><th>5급</th><th>6급</th><th>7급</th><th>8급</th><th>9급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 율</td><td>(1)% 이내</td><td>(7)% 이내</td><td>(21)% 이내</td><td>(31)% 이내</td><td>(31)% 이내</td><td>(9)% 이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1)% 이내	(31)% 이내	(31)% 이내	(9)% 이상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---</th><th>---</th><th>6급</th><th>---</th><th>8급</th><th>9급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 율</td><td>-----</td><td>-----</td><td>(22)% 이내</td><td>-----</td><td>(30.5)% 이내</td><td>(8.5)% 이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구 분	---	---	6급	---	8급	9급	비 율	-----	-----	(22)% 이내	-----	(30.5)% 이내	(8.5)% 이상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1)% 이내	(31)% 이내	(31)% 이내	(9)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---	---	6급	---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-----	-----	(22)% 이내	-----	(30.5)% 이내	(8.5)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기능직공무원							2. 기능직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6급</th><th>7급</th><th>8급</th><th>9급</th><th>10급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 율</td><td>(3)% 이내</td><td>(11)% 이내</td><td>(31)% 이내</td><td>(33)% 이내</td><td>(22)% 이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비 율	(3)% 이내	(11)% 이내	(31)% 이내	(33)% 이내	(22)% 이상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---</th><th>7급</th><th>8급</th><th>---</th><th>10급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 율</td><td>---</td><td>(17)% 이내</td><td>(35)% 이내</td><td>---</td><td>(12)% 이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구 분	---	7급	8급	---	10급	비 율	---	(17)% 이내	(35)% 이내	---	(12)% 이상				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(3)% 이내	(11)% 이내	(31)% 이내	(33)% 이내	(22)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---	7급	8급	---	10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---	(17)% 이내	(35)% 이내	---	(12)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